##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753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유용원·김기웅·임종득

강선영 • 김용태 • 강대식

성일종 · 엄태영 · 한기호

최은석・조 국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'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'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이에 국방 · 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

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,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). 법률 제 호

##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"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"을 "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(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	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
제한)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	제한) ①
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	
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	
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	
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	
시・군계획사업(이하 "도시・	
군계획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	
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	
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	
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·	
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	
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	
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	
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	
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	

형질변경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<u>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</u> 및 교정시설

마. (생 략)

1의2. ~ 9. (생략)

② ~ ① (생 략)

\_\_\_\_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<u>국방・군사에 관한 시설</u>
(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9
<u>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를</u>
<u>포함한다)</u>-----

마. (현행과 같음)

1의2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① (현행과 같음)